

特許制度의 運營과 政策開發課題

金 基 陽
〈特許廳 企劃管理官室〉



① 特許廳의 出帆

1960年代까지 우리의 特許는 特許에 관한 一般人的 認識을 提高시키므로써 特許人的 底邊을 擴大하여 온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年代는 本格的인 國際化時代이다. 모든 點에서 高速化하고, 精密化하고 있다. 우리의 生活도 그렇고, 產業經濟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生活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產業合理化를 통한 國際競爭力 強化를 主된 課題로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特許도 그간의 溫室特許에서 벗어나 曠野의 特許로 굳건하게 뿌리를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러나 從來 우리의 特許運營體制는 慢性的인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增加一路에 있는 飲食物에 대한 消化能力을 喪失한 慢性消化不良症患者과 같아서 눈을 미쳐 밖으로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환자를 治療하여 새로운 健康人으로 誕生시키는 것이 바로 特許廳의 出帆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特許運營體制로 世界激浪속으로 건강하게 出帆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與件을 克服하고, 強靱한 產業立國의 意志와 發明·技術의 自主性의 所産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經濟發展, 아니 國家發展에 있어서 發明과 考案의 役割이 重要함을 再確認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무릇 特許制度和 그 施策은 國利民福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발명이나 고안이 많이 나와 이에 대한 審査를 제대로해서 全部가 生産 實用化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特許에 관한 紛爭이 있을 경우에 公正하고, 신속하게 處理함으로써 個人財産權을 保護해야 하는 것이다.

② 適正出願에 대한 適正審査問題

特許는 참다운 考案 또는 發明의 構想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特許는 어떤 요행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막연한 期待感을 充足시키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特許는 投機의 的中 또는 冒險의 對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從來 特許에 관한 一部の 그릇된 觀念을 새로이 定立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의 出願에 대한 登錄率을 보면 그리 높지 못하다. 출원하기에 앞서 特許에 관한 技術性뿐 아니라 特許의 時代性和 社會性에 관하여 充分한 研究檢討가 있어야 하겠다.

또, 아무리 좋은 발명이나 고안이라도 生産的 經濟價値가 없는 限 無用之物이다. 따라서 生産費用과 市場性에 관한 검토도 있어야 하겠다.

共同으로 高안 또는 발명한 것을 出願 前에 충분히 討議한 後 출원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우기 比較的인 人力과 施設이 整備된 法人등 組織體의 출원이 많을수록 좋겠다.

經濟發展의 推進力의 主役割을 하는 企業體의 출원은 자못 그 重要性이 크다. 經濟發展에 있어서 계속적인 革新(說)을 主張한 J.A. Schumpeter의 企業家精神이라는 것도 結局 創意性에 의한

새로운 技術, 새로운 機械 및 새로운 方法에 관한 고안 또는 발명의 實施를 끊임 없이 追究하려는 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특허라는것도 이 발명 또는 고안의 열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體에서는 創意性 開發運動을 活潑히 展開함으로써 生産性이 向上되며, 原價가 節減되고, 資源도 節約되며 國際競爭力을 強化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의 最高經營者는 從業員의 發明意慾을 鼓舞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명 또는 考案者에 대한 相當한 補償金의 支給, 報酬의 引上, 特進 등 人事上의 優待措置를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適正出願이라 할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심사가 적정히 이루어져야 함은 더말 할것도 없다. 발명 또는 고안자가 오랜 시간 費用을 들여가면서 高度의 廣範圍한 調查研究를 한 結晶으로서, 이를 출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사가 誠實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의 與否에 따라 個人財産權의 成否가 決定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審査官의 良識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하겠으며, 審査資料의 確保와 檢索의 專門化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特許法上 審査行爲가 무엇이냐? 이른바 自由裁量行爲 또는 羈束行爲이냐의 여부는 심사에 있어 本質的인 問題로써, 이에 관하여는 別論을 要하나 아무튼 그 概念을 確立하여 심사의 統一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③ 特許權의 産業化 課題

1948年 8月15日 政府樹立 以後 우리의 工業所有權이 設定된 것을 보면, 發明이 5,320件, 實用新案이 13,836건, 意匠이 21,983건, 商標登錄이 51,941건으로써 總 93,080건이다. 이 가운데 상표와 의장등록은 大部分 實用化 되었지만,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生産化된 것이 그 一部分에 不過하다.

우리 人間生活에 便宜와 改善을 提供해 주고, 個人 또는 企業의 超過利潤獲得의 保障方法이

되며, 새로운 技術開發로 生産성을 向上시켜 國利民福을 增大케 할 수 있는 天下의 훌륭한 特許權이라도, 그것을 生産화하여 우리의 欲望을 充足시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라 하겠다.

하나의 發明特許나 실용신안이 世上에 나오기 까지에는 이 發明者나 考案者의 思考力, 時間的, 物的 所要가 相當하며 또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特許當局의 審査決定에는 莫大한 豫算의 支出과 높은 質의 人力이 多數 動員이 된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成立되는 特許權이 生産的 實效를 거두어야 함은 特許制度와 그 施策의 窮極의 인 目標이며 그 存在價値의 基盤이다.

아무리 많은 특허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成立自體에는 意味가 있는 것이고, 단 하나의 특허권이라도 生産과 連結·實用化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特許施策은 不可避하게 “特許登錄行政에서 特許開發行政으로”라는 根本的인 轉換을 해야 하는 積極命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된 허가권이 속속 生産화되어 實用化할 때에 그야말로 특허제도는 살아서 움직이는 국민복의 創出機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특허제도는 그 本來의 意義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國力의 浪費를 招來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의 特許權運營體制는 너무나 未備하여 增加하는 審査·審判業務의 處理에만도 未處理件數가 累積되어 왔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특허권의 生産化 問題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實情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特許廳의 發足에 즈음한 特許史에 있어 또하나의 歷史的인 課題로서 假稱 “特許權開發促進法”의 制定을 提唱하고 싶다.

이 법에 관하여는 特許當局은 물론 關係專門家의 衆智로 制定하여야함은 물론이다. 全特許關係人과 이에 관한 識見 있는 者의 積極的인 助言, 指導 및 協調가 있기를 바라겠다.

여기에서 이 법의 基本方向의 定立에 관하여 秋毫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1. 特許權者와 資本家와의 架橋

특허권을 생산화 하려면 資本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또 事業性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特許權者에게는 現實으로 開發所要資金이나 經營能力이 缺如된 경우가 許多하다. 따라서 特許權에 대한 生産화를 可能하게 하려면 特許권과 資本 또는 企業人이 適時適所에서 連結될 수 있도록 觸媒役割을 할 수 있는 制度的 措置가 必要하다.

발명이나 고안이 나왔을 때 이에 관한 詳細한 紹介·經濟性, 市場性 등 事業展望을 分析 評價하여 一般人에게 널리 周知시킴으로써 事業을 하려고 하는 者가 投資할 機會를 가지도록 한다.

마치 證券投資에 있어서 投資公社나 證券會社의 機能처럼 特許權開發 Center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2. 特許基金의 設置運營

現行 發明保護法은 有名無實하여 優秀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 아무런 補助가 없을 뿐 아니라 稅制, 金融 등의 側面에서도 實際 支援이 없다. 따라서 現行 發明保護法은 法體制上 裝飾物로써 이른바 宣言의 規定에 不過하다 하겠다.

實際上 國民생활의 향상이나 國家경제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발명이나 고안이 創出되었을 때에 資金力의 뒷받침이 없어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生産화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이 開發支援準備金으로서의 特許基金을 與件의 成熟을 前提로 段階的으로 設置運用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特許開發委員會의 設置運用

特許權開發의 基本的인 事項, 특허권의 投資

審査評價 및 特許基金의 支援對象의 결정 등에 관하여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特許權開發審議會를 構成하고 常設로 특허권 투자심사 및 평가와 市場調查部署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特許權開發示範業體의 指定 및 試作品에 대한 補助

특허권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를 特許示範業者로 選定하여 全社的으로 特許開發運動을 펼치도록 하며, 租稅減免, 金融支援, 特許製品의 優先購買促進, 試作品에 대한 補助金을 支給하도록 한다.

5. 特許權의 收用 및 國公營化

現行 特許法에도 일부의 根據가 있지만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要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收用 또는 直營함이 可能하도록 하며, 當該 特許權者에게는 相當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政策的 開發課題를 제기하여 본다면 특허에 있어 輸出振興, 資源節約, 重化學工業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力點開發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一定期間마다 先進技術動向을 조사하고, 우리의 特許技術의 進路를 公示토록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④ 結 論

이상 특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部分的인 문제점과 하나의 정책적 개발과제를 제기하여 보았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있어서 3大支柱에 該當하는 審判問題와 특허의 國際的 進出課題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研究 檢討가 있어야 할 줄 안다.

工業所有權을 開發하여 技術先進國隊列에 參與하자!